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5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김주영 · 윤준병 · 이병진

윤건영 • 박지혜 • 박홍근

임호선 · 서영석 · 진성준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임. 뿐만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에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임.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 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을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으로, "적응대책"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실대조사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 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지역별로 관 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 오의 생산 등) ① • ② (생 략) 오의 생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 ----- 제16조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 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관한 -----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 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 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대책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 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 활용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 ----- 위하여 실 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태조사를 하고 -----. <신 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 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

<신 설>

<u><신</u> 설>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지역별로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